

문의사항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clkim@esein.co.kr  
김은지 관세사 T/ 02-6929-3463 메일/ ejkim1@esein.co.kr

2018.07.10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 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공고 안내

### 1. 개요

‘국민안전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통관 단계에서 관계부처 전문가와 세관이 합동으로 행하는 ‘관세법 제246조의 3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고시가 명문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사항

#### ◇ 제정 사유

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안 시행(‘18.7.1)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 주요 내용

##### 가. 안전성 검사 대상 지정 기준

○ 세관장확인물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

-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 기타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

##### 나.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요청
- 관세청장은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018.07.10

문의사항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clkim@esein.co.kr  
김은지 관세사 T/ 02-6929-3463 메일/ ejkim1@esein.co.kr

## 2. 주요사항

- 다. 검사대상 지정 중지·해제 기준 마련**
  - 지정·운영중인 물품에 대하여 환경변화, 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성 검사 수행이 필요없거나 어려운 경우\* 등은 중지 또는 해제
  - \*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어 협업부처의 사후관리로 충분한 경우, 인증제도 변경된 경우 등
- 라.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요건의 위·변조 여부, 요건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 분석실시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중점 검사
  - 물품의 견본·현품사진·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필요 시 현품검사) → 검사결과를 통관부서에 통보 → 신고서 처리
- 마. 인천세관 분석실 설치에 따른 자체분석**
  - 신속한 통관을 위해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제품 등 위해 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자체분석 실시
  - \*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협업부처 검사 기관에 분석요청
- 바.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세부규정을 고시로 상향**
  -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현행 훈령\*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
  -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33호, '16.6.29)

2018.07.10

문의사항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clkim@esein.co.kr  
김은지 관세사 T/ 02-6929-3463 메일/ ejkim1@esein.co.kr

## 2. 주요사항

### 사.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
  - \*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 완료 전에 통관허용 가능,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협업부처에서 리콜 등 행정제재

### 아. 기타 정보관리 등

-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 보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외 사용 금지(위반 시 처벌)

시행일자 : 2018. 7. 1

**참고**

**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안**

□ 개정('17.12.19), 시행('18.7.1)

현행	개정안
<p>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u>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u>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u>  <u>-----</u>  <u>-----</u>  <u>-----</u> <u>하</u>  <u>게 할 수 있다.</u></p> <p><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u></p>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  
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  
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  
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  
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  
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둔다.

⑧ 제7항-----  
-----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안전성 -----  
-----.

관세청고시 제2018-##호(2018. #. ##.)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8. #. ##.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2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3

## 제3장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3
제7조(협의회 목적)	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4
제9조(안건 제출 및 배포)	4
제10조(협의회 운영)	4
제11조(실무협의회)	5

## 제4장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5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5

## 제5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제14조(검사대상 선별) .....	6
제15조(안전성 검사) .....	7
제16조(분석실 운영) .....	8
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	9
제18조(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	9
제19조(협업부처에 안전성 검사 요청) .....	10
제20조(안전성 검사 시료의 폐기) .....	10

## 제6장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통관보류 등) .....	11
제2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	11

## 제7장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등

제23조(정보관리 등) .....	12
제24조(정보공유 등) .....	12

## 제8장 보 칙

제25조(준용규정) .....	13
제26조(재검토기한) .....	13
[별표 1] .....	14
[별지 제1호 서식] .....	15
[별지 제2호 서식] .....	16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 ##호 ('18.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의 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3. “협업부처”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

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른 법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 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 분석
  - 나. 협업부처의 요건확인 내역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내역 비교·분석
  - 다.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분석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6. 안전성 검사관련 서류 등의 보관 관리
7.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출·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
8. 특이사항 발생 시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현황보고
9. 그 밖에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4.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
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
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 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 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
  - 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 라.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 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 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

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②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변경된 경우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목적)** 협의회는 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2.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소속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④ 간사는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 회의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협의회 안건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외에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전을 미리 협의·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장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 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 지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사회적 관심 물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환경변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제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입업체의 범규준수도 향상으로 제도 운영의 실익이 감소하여 각 협업부처의 사후관리 및 단속으로도 관리가 충분한 경우
3.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변경으로 안전성 검사의 의미가 없는 경우
4.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설비·예산 등이 부족한 경우, 협업부처의 정보제공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협업부처와 관세청 간 협의한 결과 중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제14조(검사대상 선별)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우범요소 등 선별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관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기준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한 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선별기준 등록을 요청한다.

#### 제15조(안전성 검사) ①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입 신고서를 배

부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은 필요시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품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사는 서류심사와 현품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현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 등을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수출입담당직원과 협업검사센터 직원(협업부처 공무원 등 포함)이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출입요건 내역 위·변조 여부
4. 수출입요건 내역과 해당 수출입 물품의 동일 여부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해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 실시 여부
6. 협업부처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 여부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 ⑥ 안전성 검사대상 신고서가 야간·휴일 등 근무시간외 또는 특정시간(16:00)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입담당직원이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사진, 관련서류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⑦ 협업검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리콜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수출입 담당직원은 신고서의 심사·검사 과정에서 신고물품이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 및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관련내용을 현황보고(통보)한다.
- ⑩ 수출입 담당직원은 일반 검사와 안전성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제16조(분석실 운영)**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 신속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분석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은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 의심물품, 개인이 반입하는 전자상거래 식품류 등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분석업무의 관할 구역은 인천세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으로 한다.



- ④ 분석의뢰 및 결과조치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 시 분석시험보고서와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 시 분석결과에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④ 분석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석의뢰 담당자에게 안전성 분석결과 등을 기재한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8조(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
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분석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견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협업검사센터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관, 협업부처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제20조(안전성 검사 시료의 폐기)**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시료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후 남은 시료를 분석회보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안전성 검사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장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통관보류 등)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수출입 업체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리콜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법 제226조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요건을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3. 수출입요건과 신고물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HS·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입요건을 회피한 경우

5. 유해물질 검출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법령에서 수출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7. 그 밖에 세관장이 안전성 검사결과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수출입담당과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

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담당과장은 제2항의 통고처분 및 제3항의 고발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해당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장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등

제23조(정보관리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검사 결과를 전산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6조5항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4조의9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정보공유 등) ①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 물품의 위험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파견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적격 여부를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25조(준용규정)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고시 제2018-##호(2018. ##. ##.)>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 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6개 부처	10개 물품	9개 법령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지정 요청서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b>품목</b> (※ 품목이 많은 경우 붙임으로 제출 가능)	품 명		비 고
적용법령			
적용기간			
요청사유	※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제출 가능		
제출자료	※ 요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등		
검사지원 계획	※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지원 계획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b>안전성 검사 결과</b>										
<b>1. 수출입 신고번호</b>	수입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b>2. 신고일자</b>	년	월	일	<b>3. 검사일시</b>	월	일	시 ~ 시			
<b>4. 신고인</b>				<b>5. 화주</b>						
<b>● 안전성 검사 대상품목 검사결과</b>										
란번호	모델·규격 일련번호	검사방법				검사결과 세부내용	비고			
		서류 심사	전량 검사	발체 검사	분석 검사					
<b>● 기타사항</b>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style="padding: 5px;">검사자</th> <th style="padding: 5px;">주무(팀장)</th> </tr> <tr> <td style="height: 40px;"> </td> <td> </td> </tr> </table>							검사자	주무(팀장)		
검사자	주무(팀장)									
<b>● 검사자</b>										
① 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② 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③ 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④ 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